

V.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1월 21일, 파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1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1996년 11월 25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1996년 11월 26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1996년 11월 29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권혁준)

가. 제안이유

'96년 3월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는 제증명등의 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누락되어 기타 제증명 사본 발급에 따른 요액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요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중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1"의 수수료 요액중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요액 명시
- 요 액 : 1필지당 300원
- 공중위생법 관계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 덕 기)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변동없이 조정하였고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집행기관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